

충청북도의회위원회의전문가활용에관한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안전심사와 관련하여 심사보조자로 활용할 전문가의 수당지급기준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보조대상업무의 지정) 위원회는 환경·과학기술·의료 및 기타 특수분야의 안전을 심사함에 있어 그 내용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심사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특정 안전의 내용중 심사보조대상업무를 지정하여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위촉절차 및 위촉기간) ①위원회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보조자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중에서 선정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 사정등을 감안하여 심사보조자의 인원 또는 위촉기간을 조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위촉기간은 1월이내에 한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회에 한하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자격기준) 위원회가 심사보조자로 활용할 전문가는 당해 안전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나목이상의 자격기준에 상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5조(심사보조자의 직무) ①심사보조자는 위촉기간 만료전에 위촉받은 안전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전이라도 위원회가 안전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심사보조자는 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이 해당 안전심사와 관련하여 검토 요구한 내용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수당의 지급) 심사보조자에 대한 위촉기간의 수당은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4』 계약직공무원의 봉급한계표중 전임계약직 공무원 나목의 한계금액과 그 50%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을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급한다.

제7조(위촉의 해지) 위원장은 심사보조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중이라도 의장에게 위촉의 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위촉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정신상의 이상등으로 위촉기간내에 위촉안전의 심사가 곤란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촉안전을 심사할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4.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
5. 위촉안전에 대한 심사가 종료된 때.

부 칙

이 규정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